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2016. 11. 9.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발의일자: 2016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16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16년 11월 9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옥진 행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공무원 직종개편 후 전환직렬의 상위직급 책정 기반을 마련하고, 타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(안 별표2)

(기준: '16.9.1.)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개정안	1.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현행	1.1% 이내	5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6.4% 이상	0.5% 이내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김덕환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타 시도 교육청 및 충청북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직급 정원채정 비율을 고려하여, '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'을 형평성 있게 조정 하려는 것으로,
-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한편, 전환직렬(구 기능직)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상위직급의 정원 채정 기준을 마련 한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정원 규칙으로 정하는 직렬별 상위직급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정 될 수 있도록,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.

붙임 : 타시도 교육청 정원채정비율 1부.

타시·도 교육청 정원책정비율

(기준: 2016.9.1.)

지역	구분	일반직(전문경력관 포함)							교육전문직원			
	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 이하	전문 경력관	소계	4급 (상당) 이상	5급 (상당)	6급 (상당)	소계
충북	조례기준	1.1%	5.0%	23.0%	34.0%	36.4%	0.5%	2,883				
	실제 책정비율	0.9%	3.7%	19.4%	32.9%	42.7%	0.5%	100.0%	14.4%	11.9%	73.7%	100.0%
경기	조례기준	2.5%	11%	39%	38%	9.5%		11,746				
	실제 책정비율	0.5%	4.1%	20.8%	31.3%	43.1%	0.2%	100.0%	10.4%	12.8%	76.8%	100.0%
강원	조례기준	2.5%	11.0%	39.0%	38.0%	9.5%		3,574				
	실제 책정비율	0.6%	3.2%	21.0%	28.8%	46.4%	0.1%	100.0%	9.4%	14.2%	76.4%	100.0%
충남	조례기준	2.0%	8.5%	33.0%	44.0%	12.0%	0.5%	3,794				
	실제 책정비율	0.6%	3.4%	19.8%	30.3%	45.5%	0.3%	100.0%	12.1%	12.8%	75.1%	100.0%
전북	조례기준	1.5%	5.5%	27.0%	45.0%	20.5%	0.5%	3,773				
	실제 책정비율	0.6%	2.8%	21.8%	34.3%	40.1%	0.3%	100.0%	11.4%	13.1%	75.4%	100.0%
전남	조례기준	2.0%	8.4%	36.0%	44.0%	9.0%	0.6%	4,554				
	실제 책정비율	0.6%	3.0%	21.5%	27.5%	46.8%	0.5%	100.0%	13.4%	12.6%	74.0%	100.0%
경북	조례기준	2.0%	8.5%	33.0%	44.0%	12.4%	0.1%	4,894				
	실제 책정비율	0.5%	3.1%	19.1%	33.2%	44.0%	0.1%	100.0%	12.2%	9.4%	78.4%	100.0%
경남	조례기준	1.0%	5.0%	23.0%	34.0%	36.5%	0.5%	5,149				
	실제 책정비율	0.5%	3.4%	19.1%	30.2%	46.6%	0.1%	100.0%	12.3%	12.0%	75.7%	100.0%
제주	조례기준	2.5%	11.0%	39.0%	38.0%	8.2%	1.3%	1,240				
	실제 책정비율	1.1%	4.6%	17.8%	24.5%	50.8%	1.1%	100.0%	14.4%	17.8%	67.8%	100.0%
도단위 (제주제외)	조례기준	1.8%	7.9%	31.6%	40.1%	18.2%	0.5%	40,367				
	실제 책정비율	0.6%	3.5%	20.4%	31.0%	44.3%	0.3%		11.8%	12.3%	75.9%	24.1%
서울	조례기준	2%	8%	30%	36%	23.5%	0.5%	6,773				
	실제 책정비율	0.8%	4.5%	22.5%	31.5%	40.5%	0.1%	100.0%	10.9%	11.5%	77.6%	100.0%
부산	조례기준	2%	8%	30%	40%	19.5%	0.5%	3,436				
	실제 책정비율	0.9%	4.5%	21.8%	35.3%	37.4%	0.1%	100.0%	14.2%	12.1%	73.7%	100.0%
대구	조례기준	1.5%	7%	30%	36%	25%	0.5%	2,432				
	실제 책정비율	1.2%	4.8%	20.7%	32.1%	41.0%	0.2%	100.0%	14.6%	13.1%	72.2%	100.0%
인천	조례기준	2%	8%	30%	36%	23.7%	0.3%	3,055				
	실제 책정비율	1.1%	5.3%	25.7%	25.7%	42.1%	0.2%	100.0%	13.8%	13.3%	72.8%	100.0%
광주	조례기준	2%	8%	30%	36%	23.7%	0.3%	1,609				
	실제 책정비율	1.6%	5.8%	24.3%	28.0%	40.0%	0.2%	100.0%	15.4%	14.1%	70.5%	100.0%
대전	조례기준	2%	8%	30%	35%	24%	1%	1,715				
	실제 책정비율	1.3%	5.8%	22.2%	26.9%	42.9%	0.9%	100.0%	14.5%	11.2%	74.3%	100.0%
울산	조례기준	2%	8%	30%	36%	23.6%	0.4%	1,529				
	실제 책정비율	1.2%	6.4%	21.9%	27.4%	42.7%	0.3%	100.0%	14.1%	14.8%	71.1%	100.0%
세종	조례기준	2.5%	11%	38.7%	38%	9.5%	0.3%	572				
	실제 책정비율	1.6%	7.9%	31.3%	36.2%	22.9%	0.2%	100.0%	8.3%	12.5%	79.2%	100.0%
시단위 (세종제외)	조례기준	1.9%	7.9%	30.0%	36.4%	23.3%	0.5%	20,549				
	실제 책정비율	1.1%	5.0%	22.7%	30.4%	40.6%	0.2%	100.0%	13.4%	12.6%	74.1%	100.0%
시·도총괄	조례기준	1.9%	7.9%	30.9%	38.4%	20.6%	0.5%	60,916				
	실제 책정비율	0.7%	4.0%	21.2%	30.8%	43.0%	0.2%		12.3%	12.4%	75.3%	100.0%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비 율	1.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-	100%

3. 교육전문직원
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
비 율	30% 이내	70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 이하
비 율	70% 이내	30% 이상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<u>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</u> (제3조제2항 관련)	[별표 2] <u>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</u> (제3조제2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직공무원	1. 일반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4급이상</td> <td>5급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</td> <td>전문경력관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11% 이내</td> <td>5% 이내</td> <td>23% 이내</td> <td>34% 이내</td> <td>36% 이상</td> <td>0.5% 이내</td> </tr> </table>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	비 율	11% 이내	5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6% 이상	0.5% 이내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4급이상</td> <td>5급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</td> <td>전문경력관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15% 이내</td> <td>8% 이내</td> <td>31% 이내</td> <td>40% 이내</td> <td>19% 이상</td> <td>0.5% 이내</td> </tr> </table>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	비 율	1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1% 이내	5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6% 이상	0.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
2~4. (생략)	2~4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